■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20. 12. 31.>

총포 폐기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폐기 대상 총포	총포의 종류	
	제조국명	제조사
	명칭	형식
	제조번호	구경
	폐기사유	허가번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총포의 폐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귀하

안내사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해당 총포와 같은 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호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기안	→	결재	→	폐기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경찰청·경찰서(총포·화약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